

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와 김·장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, 법무법인(유한) 율촌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(가나다순, 이하 총칭하여 "로펌"이라 한다)은 해외건설기업에 법률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협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(이하 "지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협회는 각 로펌에 법률컨설팅을 요청하고 각 로펌은 당해 법률컨설팅 수행에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지원기업에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컨설팅의 범위)

각 로펌이 지원기업에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- ① 해외건설 계약관련 법률 자문
- ② 해외건설 분쟁관련 법률 자문.

제3조(컨설팅 내용 보고)

각 로펌은 지원기업에 제공한 컨설팅의 내용을 각 로펌의 자체양식에 작성하여 지원기업에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관의무)

로펌은 컨설팅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대가의 지급)

- ① 협회는 각 로펌에게 본 협약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대가로서 컨설팅 시간당 500,000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.

- ② 각 로펌은 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컨설팅 대가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하고 협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협회와 로펌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내용(지원기업의 업무상 내용을 포함한다)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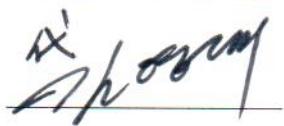
제8조(특약사항)

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협회와 로펌이 합의하여 처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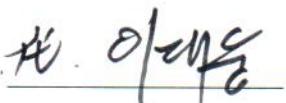
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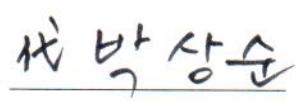
해외건설협회
회장 박선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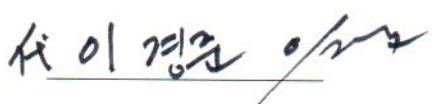
김·장 법률사무소
변호사 임병우



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
대표변호사 이규철



법무법인(유한) 율촌
대표변호사 강석훈

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대표변호사 서동우

